

(주)영원무역홀딩스 이사회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【목적】 이 규정은 이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【적용범위】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【권한】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2장 구 성

제4조 【구성】 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 및 비상근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제5조 【의장】 ① 이사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
② 대표이사의 유고나 부재시에는 정관 제34조의1 제2항에서 정한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회 의

제6조 【종류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.

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7조 【소집권자】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대표이사의 유고나 부재시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 【소집절차】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이사회소집통지서를 모사전송, 전보,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

사가 해외에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경우나 기타 각 이사 및 감사가 서면동의에 의하여 소집통지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위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9조 【결의방법】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과반수로 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 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 【부의사항】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1) 주주총회의 소집
- 2) 영업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의 승인
- 3) 정관의 변경
- 4)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
- 5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6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
- 7)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8) 이사·감사의 선임 및 해임 <개정 2022.11.11>
- 9) 이사·감사의 보수 <개정 2022.11.11>
- 10)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
- 11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- 12) 현금·주식 배당의 결정
- 13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14) 회사가 상법 제542조의 9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, 동항 각호에 따라서 회사의 최대주주, 그의 특수관계인 및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거래 <개정 2024.8.12>
- 15) 기타 주주총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앞 사전 부의할 사항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2) 신규사업진출
- 3) 신제품의 개발 또는 신기술의 도입
- 4) 중요 자금집행 및 예산운용 기타 결산
- 5) 일정 범위(회사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3) 내에서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
- 6)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의 취소
- 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와 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해임
- 8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- 9) 준법지원인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 <신설 2022.11.11>
- 10) 중요 인사정책 (채용 및 훈련포함) 및 상벌심의

- 11) 급여체계, 상여 및 후생제도
- 12) 기본 조직의 제정 및 폐쇄와 중요한 사규의 제정 및 폐쇄
- 13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
- 14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,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15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1) 중요한 투자에 관한 사항 <개정 2022.11.11>
- 2) 중요한 계약의 체결
- 3) 중요한 자산의 취득
- 4) 중요시설의 신설 및 폐쇄
- 5) 신주의 발행 또는 사채(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)의 발행
- 6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7) 대규모의 자금차입이나 보증행위 <개정 2022.11.11>
- 8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 기타 담보제공행위
- 9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10) 자기주식의 소각 <신설 2022.11.11>

4. 이사에 관한 사항

- 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2)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, 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3) 공동대표이사의 결정
- 4)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
- 5) 이사의 경업(競業) 및 동종업종 타 회사 임원의 겸임 승인

5. 기타

- 1) 중요한 소송의 제기 및 응소
- 2) 법령 및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
- 3)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② 이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
2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3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<신설 2022.11.11>
4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11조 【이사회 내 위원회】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12조 【감사 및 관계자의 의 출석】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관계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3조 【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업무집행을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이사의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 【회의장소】 이사회는 회사의 본사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하는 기타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.

제15조 【의사록】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③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제기한 자는 그 뜻을 의사록에 기재할 수 있다.

제16조 【간사】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

② 간사는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로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22.11.11>

제17조 【사외이사의 업무 수행 지원】 사외이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감사인, 법률고문 등의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11.11>

부 칙

제1조 【시행일】 이 규정은 2005년 4월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시행일】 이 규정은 2012년 4월부터 시행한다.

제3조 【시행일】 이 규정은 2014년 4월부터 시행한다.

제4조 【시행일】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5조 【시행일】 이 규정은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